

ITU '98 이사회 주요결과

이봉국/TTA 표준기획본부 국제협력부장

본고는 '98 ITU 이사회(1998. 5. 20~29)에서 논의한 핵심의제를 편역한 것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환경에서 ITU이사회의 안건이 어느 때보다도 사업지향적임을 알 수 있다.

ITU이사회의 조직 및 임무는 현장에 규정된 바와 같으며 여기서 설명은 생략한다.

이사회 임원

'98 이사회 의장단은 다음과 같다. :

- 의장 : Mr. Bernard Rouxville(프랑스)
- 부의장 : Mrs. Lyndall Shope-Mafole (남아공)
- 의장(재정 상임위원회) :
Mr. Ulrich Mohr (독일)
- 의장(인사 상임위원회) :
Mr. Adrian Bocsan (루마니아)

ITU 전략계획(1999~2003)

이사회는 지난해 조직된 전략계획 작업반의 1999~2003 전략계획안을 검토하였다. 이 계획안은 ITU가 향후 전기통신환경의 새로운 동향과 개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보다

탄력적인 기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도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연합의 글로벌 비전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ITU의 동향을 분석하고, 핵심사안을 확인하여, 향후 4년간의 목표와 전략 및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사회는 또한 사무국에 지시하여 금번 전권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ITU의 기본 운영 계획 실행에 관한 권고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세부적인 활동규정, 다양한 기구의 목표 성취과정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 선정, 다양한 업무의 재원규정과 업무부담 시나리오 설정, 우선순위 재조정을 통해 재원 적자를 공개하는 전략규정 등의 법안을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도록 세부 운영과 재정계획을 갖춰 전략계획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전략계획안에 따르면, "전세계 정보경제 사

회에서 ITU가 정보통신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루는 핵심기구라고 믿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단일기구로서 국제지역에 관한 모든 문제의 핵심역할자로 활동하기에 이 세계는 너무나 복잡하고, 정보통신은 널리 확산되어 있다. 따라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전략을 도출해야 하는 바, 1999~2003년에 연합이 직면하게 되는 전략적인 현안은 각계의 사람들이 전세계 정보경제 사회에 참여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회원국과 부문별 회원들(통신산업계 회원사)이 정보통신망을 개발하여 통신과 정보서비스를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하는 탁월한 국제포럼으로 존속하는 것이다.”

본 계획은 ITU 가용 재정자원의 감소, 인터넷 현상, 해당부문 관련 신규 사업자 및 수많은 신규 세력들의 활동 참여확대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에 상당한 의사결정권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그 임무의 수정을 제안하고 있다. 그 결과로 ITU가 정보통신 부문과 변화하는 환경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려면 연합에서 제로성장의 예산정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ITU 자체를 상업(商業)기구로 변환시키지 않고 원가 회수 등의 수익발생 옵션을 더욱 모색해야 한다.

양해각서(MoUs)

금번 이사회에 상정된 4개 양해각서는 다음과 같다 :

- The Global Mobile Communications by Satellite(GMPCS) MoU

- The generic Top Level Domain Names (gTLD)MoU
- 단파, 중파 및 장파 시스템 생산을 위한 DRM(Digital Radio Mondiale) MoU
- 국제 정보통신 분쟁결의 각서(DRT-MoU)

The Global Mobile Communications by Satellite (GMPCS) MoU

이사회는 회의에 앞서 GMPCS-MoU 비공식 그룹에 두 가지 제안을 했다 :

하나는 ITU 사무국이 GMPCS-MoU 약정의 수탁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 GMPCS 단말기에 부착될 GMPCS-MoU 마크에 ITU란 약어 사용 요청이다.

GMPCS-MoU 비공식 그룹은 1996년 ITU가 조직한 제1차 세계 정보통신정책포럼(WTPF)에서 설립되었으며, 그 결과 선정된 5개의 의견가운데 잠정적인 양해각서가 포함되어 있다.

의견에 제시된 대로, 비공식 관리그룹, GMPCS 사업자, 서비스 사업자, 단말기 제조업자 및 산업계 대표들은 약정을 공동으로 작성하기 위해 MoU 협정을 최종 승인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1997년 2월 MoU의 승인에 따라, GMPCS 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약정이 1997년 10월 7일에 작성되어 최종 승인되었고 약정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구현하기 위한 계획이 입안되었다. 여기에는 형식승인 절차등록의 계획표와 통지 절차를 포함하여, 약정의 수탁자로서 제안된 ITU의 역할측면에서 ITU와 협력하여 사용할 계획표와 통지절차가 수록되어 있다.

이사회는 회의에 앞서 GMPCS-MoU 활동에서 ITU 역할에 대한 1)원가전액회수를 요



구하고 2)ITU 약어의 사용요청 외에도 해당 사용에 대한 3)로열티 부담을 제안했다. 처음 두 가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신속히 이루어졌지만, 로열티 측면에서는 장시간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ITU 약어사용이 사업자, 제조업자 및 최종 사용자 등 대다수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이유는 ITU 표시를 함으로서 국경을 넘어 GMPCS 단말기의 자유 유통을 원활히 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그렇게 사용함으로써 결국 로열티는 자유경쟁환경에서 얻는 가치와 상응하는 것이다.

이는 ITU가 기구의 재정적 토대를 강화시킬 여러가지 수익 옵션을 모색하고 있었다는 것과 보다 더 관련성이 있다. ITU는 장기적으로 일반 예산을 분담금 수준으로 축소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ITU의 의사결정권이 이사회나 전권위원회에 남아있게 됨에 따라, 로열티가 이 조직이 정부간 성격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이것은 ITU의 이름을 파는 것과 같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 원가회수메커니즘은 특정 구현을 착수함에 앞서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다. ITU 약어의 사용허가에 대한 비용회수는 필수적인 반면에, 로열티는 이윤추구의 동기가 되지 않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제공 지침이 없고, 법적·재정적인 사항을 적절히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 백만개의 모델이 로열티에 관계없이 ITU 권고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고 있고, GMPCS와 같은 특정유형의 시스템에 대한 로열티 도입은 차별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으며 수수료의 가치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견해차를 조정하여 합의 도출을 나타내는 결의 초안작성을 시도하고자 초안작성그룹이

조직되었다. 초안작성그룹에서 제출한 텍스트를 토대로, 이사회는 GMPCS-MoU 약정에 대한 ITU의 수탁자 역할을 승인하였으며, 제3자에 의한 ITU 이름, 약어, 깃발(flag)이나 紋章(emblem) 사용에 대한 총괄 정책이 승인될 때까지 로열티 요금의 도입을 연기하는 것과, 그 밖에 ITU가 그러한 사용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는 단서와 원가전액회수를 토대로 한 GMPCS 마크의 일부분으로 ITU 약어의 사용을 승인하였다. 결국 ITU 사무총장, 3개 부문 국장 및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는 부문별 자문기관에 차기 이사회가 채택하도록 다른 국제기구의 최근 활동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The generic Top Level Domain Names (gTLD) MoU

이사회 의장은 gTLD-MoU 자체규정은 물론 gTLD-MoU 수탁자인 ITU사무총장의 역할에 대해 ITU 회원국과 부문별 회원들이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는 '97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이사회는 회의에 앞서 적절한 조치와 검토를 위한 협의결과를 도출했다.

3개월간의 협의에서 수탁자로서의 ITU의 역할과 MoU에 관한 반응을 17개나 끌어냈다. 요약하면 4개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MoU 수탁자로서 ITU 역할에 관하여, 7명은 무자격을 표명했고, 5명은 자격을 인정하였으며, 기존의 ITU 기능과 다른 gTLD-MoU 등의 자발적 협정을 포함하여 세계정보통신의 이해를 촉진시킨다는 면에서 원칙적으로 ITU의 역할을 지지하는 한편, 일반적인 인터넷 통제와 특정 도메인의 명명문제에 대한 ITU 위치가 명확해질 때까지 사무총장의 역할과

기능을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표명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또한 ITU 사무총장이 IAHC 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ITU의 역할이 이전에 채택되었던 단순한 지원역할을 넘어서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사람도 있다.

MoU 자체에 대해, 6명은 gTLD-MoU에 대해 부적격하다고 표명했고, 6명은 MoU에 대한 자격을 인정한 것 같다. 대체로, 이들 응답자들은 일반적인 인터넷 통제구조와 특정 도메인명칭 공간에 대한 관리와 운영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일반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IAHC(Internet International Ad Hoc Committee)가 확인한 문제의 국제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메인 명칭 공간확장과 그의 관리에 있어서 경쟁을 도입하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gTLD-MoU를 올바른 방향의 한 단계로서 보려하지만, IAHC가 권고한 구조가 어떻게 향상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을 했다.

표명된 관심사 가운데 일부는 정책감독 위원회(안) 회원들이 어느 정도로 주주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였다.

7개의 신규 gTLD 제정으로 도메인 명칭의 포화상태 문제를 해결한다는데 의문이 제기되었고, 향후에는 신규 gTLD 제정기준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며, 언어의 다양성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또한 gTLD를 강제하는 방법으로서 SLD(Second Level Domains)할당·관리기준 개발

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gTLD 등록 기능에서의 경쟁과 지역적 다양성에 대한 제안을 대체로 환영하는 한편, 일부 응답자들은 IAHC가 제안한 메커니즘이 향후 작업에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일부 응답자들은 IAHC가 제안한 분쟁결의 메커니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 응답자는 gTLD-MoU에 조건부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전 범주의 응답자와 마찬가지로, 위 응답자의 의견도 똑같음을 확인하고, 세부적으로 균형있게 분석한 결과 gTLD-MoU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긍정적인 측면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마지막으로 4명의 응답자들은 결론 도출에 앞서 일반적인 인터넷 관리와 특정 도메인 명칭 문제에 대한 향후 토론이 ITU와 다른 국제 포럼에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금번 이사회에서 몇몇 국가는 ITU가 인터넷 문제에 보다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gTLD-MoU와 일반적인 인터넷 관리에 대한 신규 제안을 포함하여 현재 미국에서 작성하고 있는 백서에 비취보아, 이사회는 그 문제에 대한 토론을 '98 전권위원회에 일임하기로 결정하였다.

단파, 중파 및 장파 방송용 디지털 세계표준의 생산을 위한 DRM(Digital Radio Mondiale) MoU

DRM은 방송사업자, 네트워크사업자, 송·수신기 제조업자, 기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산업체와 표준·규제 단체들이 협력하여 활동하기 위한 단일포럼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에 설립된 비영리 컨소시엄이다.

DRM의 목적은 단일의 시험 인증된, 개방적



인 소비자 중심의 디지털 방송 세계 표준인 단파, 중파, 장파 방송 시스템을 생산하는 것이다.

DRM MoU에서 컨소시엄은 ITU가 수탁자로서의 역할수행을 요청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MoU의 원칙을 충분히 지지하는 한편, DRM의 배경을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 문제에 대한 확고한 자세를 취하기전에 추가정보를 요청하였다. 동시에 ITU와의 협력을 통해 활동하고자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다른 의견도 있었다.

일부에서는 일단 논의된 중심활동을 고려하여 DRM-MoU를 신속히 승인하고자 한다고 표명하였다. 협력협정에 필요한 전략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토의시간부족이라는 측면에서, 이사회는 모든 결정을 전권위원회에 맡기기로 결정했으며, MoU가 ITU에 이로운 것으로 여겨지도록 글로벌정책의 개발을 요청하였으며, 해당 기준에 따라 ITU가 MoU 수탁자로서의 역할수행을 요청하였다.

국제 정보통신 분쟁결의 각서(DRT-MoU)

정보통신의 세계화, 자유화와 경쟁증가로 인한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규제단체 그룹, 기존 사업자, 신규 사업자와 전문 법률회사들이 정보통신분쟁해결에 관한 국제포럼이라는 특별그룹을 조직하였다.

이 그룹의 목적은 모든 전기통신부문 회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특정부문의 자발적 국제분쟁해결 메커니즘에 합의하는 것이다.

오늘날 중재, 조정 및 법정 등의 국제분쟁

을 다루기 위한 분쟁해결 메커니즘은 존재하지만 전기통신부문에서 빠르게 대두되는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다음 분야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 기술변화의 속도 및 복잡성;
- 전기통신망의 급속한 발달;
- 국내 및 국제상호접속협정의 필요성 증대;
- 종래 보호받던 시장에 신규사업자 증가;
- 희소자원의 할당압력가중;
- 정부조달에서 전자상거래에 이르는 새로운 경쟁분야.

국제전기통신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ITU 때문에 본 그룹은 전기통신분쟁해결 양해각서 및 백서(White Paper)를 작성완료하고 ITU사무총장이 MoU의 수탁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청하였다.

DRM-MoU에 대하여 이사회는 양해각서(MoU) 및 연기된 검토사항에 대한 전세계적 전략의 채택을 기다리기로 결정하였다.

우주 및 지상업무 통고에 대한 원가 회수

1997년 이사회는 우주전파통신업무에 관한 주간회보(Weekly Circular)의 특집(特輯)발행을 위한 처리비용의 전액회수원칙에 합의하고 절차 및 비용과 전액할당을 바탕으로 하는 요금스케줄 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장차 원가회수의 대상이 될 만한 제품 및 서비스를 지정하도록 요청하였다.

현재 전파통신국에서는 제공해야 할 서비스에 의한 작업부담과 회원의 기대가 두드러진

증가를 보이고 있다. 빠른 기술변화로 비롯된 이러한 증가로 특히 새로운 디지털이동통신기술, 정지궤도 및 비정지궤도(non-GSO)를 이용한 고정 및 이동통신 위성서비스 계획의 두드러진 성장 때문이다. 부분적으로는 위성통신망 과다 신청 관행이 점증하는데 기인되는 것이다.

우주업무통고에 원가회수를 적용하면 형평성과 능률적 이점에서 보아 ITU회원에게 혜택을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공평한 이익은 전파통신국에서 제공한 각종 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방법에 관련된 것이며, 능률적인 이익은 예를 들어 관련 비용 때문에 우주통고에 대한 과다신청관행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억제력과 관련된 것이다. 상황의 개선을 위한 최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18개월간 지체되어 처리를 대기하고 있는 잔여 통고서류를 줄여 신청량을 삭감시킴으로서 전파통신국의 직원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를 이행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 가운데는 대체로 회원이 참여하지 않는 ITU 활동분야에서 원가회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이는 일련의 특정 회원국이나 고객에게 국한된 것이다.

위성망통고에 필요한 각 처리과정의 세부비용분석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사전(事前)발간 요구에 2500S프랑과 단순 조정요구 15,000S프랑을 제안하였다. 전파규칙(RR) 결의46관련 사항에 대한 보다 복잡한 조정요구는 정지궤도 위성 조정요구 43,500 S프랑과 비정지궤도 위성 21,500 S프랑에 달한다. 위성망 신청 처리절차와 관련된 모든 비용 총당액과 회수된 비용은 위성망 신청의 처리와 발간이외의 다른 목적에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방침 가운데 하나이다. 2000-2003예산안에 반영된 예

상수입은 약 3000만 S프랑에 달한다.

이것이 금년 이사회의 논점가운데 하나이다. 문서의 일반적 원칙을 지지하는 나라도 몇몇 있었으나 ITU는 사업기관이 아니며 극히 한정된 일부 수혜자만을 위한 특정 서비스 제공에 고비용이 소요된다고 보는 측도 있어 원가회수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비용(費用)귀속(歸屬)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논쟁도 있었다. 기타 대다수는 더 이상 지체 없이 추진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요금스케줄 시행이 분담금단위에 명확한 영향을 보여주지 않은 것과 원가회수가 분담금단위를 낮추기 위한 명분으로 이용되지 않고 회원다수에게 혜택이 없는 자동적 자금조달수단과 연계되었음을 공감하는 사람도 있었다.

제안된 스케줄은 ITU의 재정기반강화에 대한 교토 결의39의 정신에 따른 것이 아니며 비용회수는 검토해야 할 일개 요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반면에 만약 ITU가 효과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건실한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면 재원의 감소가 치명적이라고 가정하여 조직의 재정기초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리고 모든 ITU활동은 3개 사업단(clusters)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

- 분담금을 통한 통상예산 자금조달
- 부분적 원가회수
- 전액 원가회수

기타 제기된 의견은 국가당 신청 페이지가운데 일정량은 무료이고 일정량 이상의 추가 페이지는 개도국이나 소규모사업이 부당하게 영향받지 않도록 유료화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규모사업은 소규모사업에 비하여 고



액을 지불해야하는 증분(增分)요금의 적용도 제안하였다. 기일 내에 지불하지 않는데 대한 제출의 처리문제도 제기되었다.

기타 절약이 되어야 하며 잔무(殘務)를 처리하고 비용회수가 없이 처리과정을 단순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잔무처리를 위해 대기중인 위성통고에 영향을 미치는 날짜와 주관청이 각 위성계획의 사업소유권자(owners)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메커니즘을 설정해야 하는 사실을 가정해 볼 때 시행예정표도 중요한 문제였다.

이에 따라 세 가지 가능한 날짜가 제안되었다 :

- 1997. 6. 27 : 작년 이사회 폐막일.
이것은 이때까지 접수한 모든 신청에 적용하는 요금을 의미함
- 1998. 6. 1 : 금년 이사회 폐막일로서 이 경우 현재부터 접수한 신청에 한하여 적용
- 1999. 1. 1 : 국가레벨에서 복구를 진전시킬 시간을 연장해 주는 것임.

신청한 발효일자는 물론 정부 및 사업자시스템으로 인한 중요하고 평가되지 않은 영향력을 감안하여 이사회는 이 문제의 결정을 전권위원회에 회부기로 결정하였다.

일반적인 원가회수문제에 대하여 이사회는 합의할 수 없었다.

- 적용범위(적용대상 서비스 및 생산품)
- 적용한계(일부 또는 전부)
- 적용조건(수혜자가 회원전체인지 또는 한정된 일부회원인지의 여부 및 통상보다 확대 적용하는 경우를 결정하는 방법)

원가회수를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적용하더라도 투명하고 공평한 방법으로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바 서비스 및 생산품 전부 또는 일부의 원가회수에 해당될 것이다.

서비스 및 생산품의 유형에 종속되는 기준이 마련된다면, 일반적으로 일부 한정된 회원국에서 추구하는 서비스 및 생산품,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시설수준이상을 요구할 경우 또는 정부나 공공단체보다 기업체에 주로 한정하여 요금을 부과할 경우 해당 서비스 및 생산품은 비용회수의 대상이 된다고 합의하였다.

이사회는 사무총장과 국장(ITU-R)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 PP-98에 보고하도록 함:

- 세부기준 개발;
- 특성, 비용, 이득 및 비용회수 적용부분 등에 관한 세부자료와 함께 원가 회수가 가능한 생산품 및 서비스를 지정.

제2, 3지역의 방송위성업무(BSS)계획

원가회수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제1, 3지역(유럽, 아프리카 및 아시아/호주)에 대한 방송위성업무계획을 둘러싼 토론이 금년 이사회에서 가장 이론이 분분한 의제였을 것이다. RR 부록 30 및 30A에 규정된 BSS계획은 위성 텔레비전을 제공하는데 사용된다. '97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97) 결의 532로 방송위성업무의 경제적인 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충분한 량의 채널을 제공하기 위하여 BSS 재계획수행을 요구하였다.

이사회가 제기할 문제는 예비연구를 위해 따라야 할 원칙에 관련된 것이다.

이 계획의 시행에 사용될 기술기준과 나라

별 채널수의 증가가능성에 대하여 WRC-97에서 합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의 532를 채택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회의상호간대표그룹(IRG)과 전문기술자그룹(GTE)의 설립을 요청하였다. 결의에 따라 WRC-97은 이를 위한 일련의 적용할 원칙을 준비하였다.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이들 두 원칙이 사실상 상호 모순된 것으로 작업의 추진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는 현행 부록 30 및 30A에 따라 통고된 할당만을 검토하도록 IRG와 GTE에 요청한 것으로 이는 이미 운용중이며 사용개시일도 ITU에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추가요건이나 소지역 시스템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생각하기를 각 나라별 약10개의 아나로그 채널에 해당하는 최소 할당용량의 증가를 검토하라는 WRC-97의 요구를 가정해 볼 때 부록 30 및 30A의 규정만을 적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추가요건도 검토해야할 경우에는, 현재까지 접수한 다량의 추가분으로 심지어 불가능하거나 재계획 실행(exercises)에 필요한 충분한 스펙트럼 확보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합의 모든 회원이 스펙트럼 및 궤도를 공평하게 이용하게 하고 주로 국내영역(coverage)을 기본으로 하는 일개 국가나 국가집단에서 이들 대역의 독점사용 회피하자는 부록 30 및 30A의 개정목적은 추가로 검토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14개국에서 결의 초안을 상정하였다. 이 결의는 IRG 및 GTE에 대한 지시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 대표는 이사회에서는 조약제정회의(WRC)에서 채택된 결의사항을 수정할 권한이 없으며 제안된 결의사항은 이사회에서 제안하기 이전의 것이라고 본다고 하였다. 그리

고 추가 요구조건이 모두 처리될 때까지 WRC-97에서 요구한 국가별 채널수의 증가를 위한 충분한 스펙트럼의 유무를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면 이 문제를 투표 회부토록 요구하였다.

사실상 이사회에서의 토론은 WRC-97와 동일한 과제의 연속이며 단지 반대 1표와 기권 3표의 거수투표에 의한 결의초안 채택으로 끝났다. 그 결과 이사회는:

결의사항

IRG 및 GTE는 결의532(WRC-97) 붙임 1의 원칙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결의 721(WRC-97)의 의제항목 1.1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 전파통신국장이 제출한 IRG보고서를 검토하고 각국에게 BSS시스템의 경제적인 개발이 가능한 상당량의 스펙트럼을 제공하도록 차기회의계획 재작성의 기초를 결정;

- BRO이 RR S14조에 의거 회의(WRC)의 결론에 따라 판정결과를 수정하도록 RR 2674/S2313의 적용에 관한 전파관리위원회(RRB) 절차규칙에 대하여 주관청에서 표명한 반대의견을 검토

전파통신국(BR)에 대한 지시

- 가능한 위치 추천에 최대한의 유연성을 가진 IRG와 GTE의 중요성에 주의를 기울이며 기존 위치와 대체되는 선호 궤도 위치에 대하여 주관청과 협의
- IRG의 판정에 최대한의 신뢰를 부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와 협의하여 ITU 전지역 주관청의 적절한 대표를 확보

2000년 세계전파통신회의

차기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 대한 논의는 WRC-97에서 채택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위해 제출된 의제초안 범위에 본질적으로 초점이 맞추어 있다.

대부분의 대표가 WRC는 단일 회의로서 검토할 사항이 너무나 많은데 대하여 반복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2년 주기로 WRC를 개최하는 근본적 이유는 정확히 말해서 현재 우선 처리할 문제에 해당하는 한정된 의제만을 제기하는 능력이 강화되고, 지친 채로 합의에 이르는 마라톤 타입의 회의로 끝나는 것이다. 끈질긴 토론에도 불구하고 WRC-97에서 제안한 장문의 의제목록에서(3페이지에 달하는 의제!)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아무런 합의도 보지 못하였다. 오직 한 의제만 삭제되고 몇 가지는 이사회에서 채택한 방송 위성업무계획과 RR부록 30 및 30A 계획 개정의 결과에 따라 수정되었다.

이사회는 1999년에 개최기로 했던 세계전파통신회의(WRC)를 2000년으로 연기기로 결정하고 이상의 수정에 따라 WRC-97에 제안된

의제를 바탕으로 의제를 승인하였다. 한편 이사회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 및 시설의 평가 결과에 따라 WRC-2000회의를 이스탄불에서 개최기로 한 터키정부의 초청을 수락하였다.

그리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 WRC-2000회의 개최일자를 5월 8일부터 6월 2일로 승인하였다.

2000년 가을에 몬트리올에서 개최될 세계전파통신표준화회의(WTSC)준비를 위한 ITU-TS 최종 연구반회의를 1월부터 6월까지 연속 개최하는 사실을 근거로 조정하게 된 것이다. 아메리카 및 아시아 텔레콤 2000등의 기타주요행사는 제외하고 연합의 통상업무(언어, 복사작업, 정보 및 전산업무 등의 회의업무)로 일년 중 거의 개최되는 두 가지 행사를 병행 개최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기 위한 분석이 필요하다.

관련 **전파통신총회(RA)**는 WRC-2000에 앞서 2000. 5. 1에서 5일까지 개최예정이다.

차기이사회

이사회는 차기 정기회기는 1999. 6. 14~25 제네바에서 개최예정임. 